■ 공소청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165호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○ ○ ○ 공 소 청

우편번호/ 주소 전화/ 팩스/

등록번호

수 신: ○○○(기관장) 발 신: ○○○**공소청장대리**

검 사: ㊞

제 목: **공무원 등 고소·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서**

귀 기관 소속 직원 에 대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으므로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제3항(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제3항, 「군인사법」 제59조의3제1항, 「사립학교법」 제66조의3제1항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의2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2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37조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80조의2,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의2)에 따라 통보합니다.

사 건 번 호	년 형제 호	
피 고 소 (피 고 발) 인	성 명	
	주민등록번호	
	소속 및 직위	
결 정 일 자	죄 명	결 정 내 용
. . .		
. . .		
. . .		
. . .		
. . .		
. . .		
. . .		
피 고 소 (피 고 발) 사 실 요 지		
비 고	귀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사건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통보하오니 적절히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